■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교육대상</th><th>교육시간
(교육시기)</th><th>교육내용</th></tr>
<tr><td rowspan="3">1. 신규 교육·훈련</td><td rowspan="2">근로자</td><td>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td><td>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td><td rowspan="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사례, 사고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td></tr>
<tr><td>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td><td>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td></tr>
<tr><td>근로자가 아닌 사람</td><td>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td><td>2시간 이상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td></tr>
<tr><td rowspan="3">2. 정기 교육·훈련</td><td colspan="2">가. 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td><td>연간 3시간 이상</td><td rowspan="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td></tr>
<tr><td colspan="2">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td><td>반기별 6시간 이상</td></tr>
<tr><td colspan="2">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td><td>반기별 3시간 이상</td></tr>
</table>

3.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해서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